

#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교역규모 검토

구 도 영 \*

1. 머리말
2. 사무역의 교역 규모
  - 1) 조정에서 사무역 규모 언급과 銀
  - 2) 사무역 통제규정
  - 3) 사무역 단속 적발 사례
  - 4) 銀무역의 흐름
3. 공무역의 교역 규모
  - 1) 16세기 초 공무역 규모 사례
  - 2) 공무역의 부분 무역 규모
  - 3) 사행에 운영된 수레의 양과 공사무역 비율
4. 맷음말

## 1. 머리말

16세기 전후 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의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먼저 주목하여 진행되었다.<sup>1)</sup> 이들 연구는 16세기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생산

\*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小葉田淳, 1969 『中世日支交通貿易史の研究』, 刀江書院; 佐佐木銀彌, 1970 「海外貿易と國內經濟」『講座日本史』3, 東京大出版會;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社; 小葉田淳, 1976 『金銀貿易史の研究』, 法政大出版局; 鄭樸生, 1985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岸本美緒, 1998 『東アジアの「近世」』, 山川出版社; 村井章介, 2000 『東南アジアのなかの古琉球』『歴史評論』 603, 川勝平太 編, 2003 『アジア太平洋經濟圈史 1500~2000』, 藤原書店; 岩井茂樹, 2004 『十六世紀における中國交易の秩序模索: 互市の現

력 증대와 교역의 발달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중국대륙이 銀 유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물적·인적 교류의 창구와 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아시아 諸國의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가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방법론은 16세기 조선의 문제에서 접근하면 아쉬운 점이 엿보인다.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축을 중국 연안에서부터 日本, 琉球 및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제 해양세력권에 지나치게 집중하였다. 몽골 등 북방지역의 陸路 경제교류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고 있으나, 정작 16세기 명과 가장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朝鮮의 교역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소홀히 취급해왔다.

일례로 16~18세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광역적 교역양상을 정리하는 주요 연구에서는 명에 가장 많은 사행을 파견한 나라가 琉球였다고 정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이 1年 3貢으로 명에 가장 많은 사행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大明會典』 朝貢편의 첫 장부터 등장하며, 각종 다수의 사료에서 확인되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琉球를 명에 朝貢使行을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로 보고, 이를 근거하여 琉球를 사행무역으로 번영한 국가로 주목하고 있다.<sup>2)</sup> 또한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조선에서 生絲, 銀, 후추 등 특산품이 산출되지 않아 조선의 국제 교역 참여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특산품 없이 중계무역을 했던 유구에 대해서는 사행무역으로 번영한 국가라고 설명하여 논리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sup>3)</sup>

實とその認識』『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中村哲(정안기 옮김), 2005 『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 혜안: 高良倉吉(원정식 옮김), 2008 『류큐왕국』, 도서출판 소화, 川勝平太, 2012 『「鎖國」と資本主義』, 藤原書店: 村井章介, 2012 『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筑摩書房.

2) 이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39년에 발표된 아키야마 겐조의 연구성과를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琉球 연구자인 다카라 구라요시도 유구의 조공횟수를 171회, 안남을 89회, 조선을 30회라고 언급하였는데[高良倉吉(원정식 옮김), 위의 책], 이 조공횟수 통계는 1939년에 발표된 아키야마 겐조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秋山謙藏, 1939 『日支交涉史研究』, 岩波書店). 기시모토 미오 역시 1930년대 아키야마 겐조의 연구성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학계에서도 1985년 鄭樸生이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다루면서, 조선은 정기사행만 1년 3번이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鄭樸生, 앞의 책, 65-67면). 실제로 조선은 명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 약 1,200회에 달하는 사행을 파견하였다(박성주, 2004 『高麗·朝鮮의 遣明使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내의 경우에서도 16세기 조선을 동아시아의 경제 주체로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존 일본학계의 학설이 지배해온 도그마가 가져온 고착화된 연구 시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학계의 16세기 조선 대명 사행무역(공무역, 사무역)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16세기에 조선 역시 사행무역, 그 중에서도 사무역과 은 수출이 확대되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sup>4)</sup> 16세기 부상대고의 활동을 통해 대명무역 활동이 언급되었으며,<sup>5)</sup> 15~16세기 조선의 주요 수입품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과 동향, 무역 방법 등이 확인되었다.<sup>6)</sup> 근래에는 16세기 조선 사무역의 정책 방향 및 주요 국면들, 그리고 수출품을 설명한 연구도 도출되었다.<sup>7)</sup>

이들 연구는 16세기 조선의 대명 사행무역 성장과 조선사회의 경제적 발달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행무역에서 수출입된 물품을 조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조선 사행무역의 전체상과 구체상을 씨줄과 날줄로 엮을 만큼의 연구 축적은 아직 요원하다. 16세기 사행무역 양상을 한 논문 전체에 풀어내거나, 15~16세기 수입품 전체를 다루면서 16세기 정황이 일부 확

- 
- 3) 岸本美緒(홍성화 옮김), 2014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역사와세계』 45, 282-286면, 295면.
  - 4) 한상권, 1983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銀貿易을 中心으로」『金哲峻博士 華甲紀念史學論集』, 지식산업사; 이태진, 1986 「16세기 東아시아의 歷史的 狀況과 文化」『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94 「전근대 한·중 교역사의 虛와 實」『진단학보』 78; 2000 「16세기 國제교역의 發展과 서울상업의 성쇠」『서울상업사』, 태학사.
  - 5) 백승철, 1994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 활동」『역사와 현실』 13; 박평식, 1999 『朝鮮前期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 6) 조영록, 1966 「수우각 무역을 통해 본 鮮明關係」『동국사학』 9; 이상옥, 1969 「對明 學的 交流에 對한 一考察」『중국학보』 10; 이준희, 1977 「朝鮮前期의 對明書冊貿易」『진단학보』 44; 강성조, 1982 「조선 전반기 對明唐物 需要에 대한 一研究：紗羅綾緞을 중심으로」『관대논문집』 10; 이원순, 1983 「赴京使行의 文化史的 意義」『사학연구』 36; 배현숙, 1999 「宣祖初 校書館活動과 書籍流通考：柳希春의 〈眉巖日記〉 分析을 中心으로」『서지학연구』 18; 신양선, 1999 「16세기 조선시대의 서적수입정책」『실학사상연구』 10·11; 남미혜, 2000 「15·16세기 복식사이의 유행과 국가의 대응책：사라능단을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27.
  - 7) 구도영, 2012 「16세기 對明 私貿易의 정책 방향과 굴레」『조선시대사학보』 62; 2015 「16세기 조선의 對明貿易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국면」『역사학보』 226; 2017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수출품 구성과 그 추이」『대동문화연구』 100.

인될 뿐이다. 특히 조선의 무역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가 없어서, 16세기 조선의 사행무역 발달이라는 명제는 선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그간 16세기 조선의 무역 규모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해당 시기 계량화된 수치로 무역규모를 드러내고 있는 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사무역은 명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사행무역 경로에서 이루어지지만, 조선 조정의 통제 하에 있어 ‘은밀히’ 전개되었던 이유로, 공식 기록은 물론 개인 문집에도 이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기란 쉽지 않았다. 공무역 분야조차 교역 품의 종류와 양을 정량적으로 언급한 별도의 상세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당시 동아시아 무역 연구에서 무역규모를 다양한 정황을 통해 추론 또는 짐작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조선의 대명무역 규모 연구는 아직 이러한 추산조차 시도된 바 없다. 당시 사료에서 확인되는 정황과 사무역 발각사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역의 여러 단서를 확보하여 그 양상과 규모의 윤곽을 가늠하는 작업은 16세기 조명무역 연구 성장에 일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권역 내 조선의 역할과 위치를 재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료에서 확인되는 단서들을 추적하여 16세기 조선의 연간 사행무역 규모의 윤곽을 일부분이나마 검토해 볼 것이다.<sup>8)</sup> 조정에서 공사무역 규모 언급, 사무역 통제규정, 사무역 단속 적발 사례, 銀무역의 흐름, 사행에 운영된 수레의 양 등 방증자료 등을 통해 교역 규모를 가늠하는 작업은 직접

8) 본고에서 검토할 조선의 사행무역은 조명간 합법무역 경로로, 進貢·賜與, 공무역, 사무역으로 이루어진다. 進貢·賜與는 조선이 사행을 통해 明에 貢物을 바치고, 明이 조선사행에 게 일정한 물품을 내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역시 선물교환의 형태를 띤 경제활동의 일환이지만, 조명간 儀禮의 성격이 강하며 상거래를 목적한 활동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공무역은 조선 정부의 公的 資金을 토대로 하여, 국가 운영과 왕실에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을 명에서 수입해오는 것을 말한다. 사무역은 사행단 일행이 선물 구입 및 수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사로운 무역을 말한다. 즉 조선 정부가 발주한 것이면 공무역이고, 사행무역에 편승하여 개인이 발주하여 행한 무역은 사무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 등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구도영, 2013 「조선 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사학연구』 109).

적으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16세기 조선 대명무역 연구에서 교역 규모를 해아리고 이해하는 데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sup>9)</sup>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무역의 교역규모를, 3장에서는 공무역 교역규모의 윤곽에 접근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16세기 동아시아 교역 질서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은 조선 대명무역의 교역규모를 가늠하는 데에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 사무역의 교역 규모

16세기 조선의 대명 사무역 교역규모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 전기에 사무역을 일정량 이상 확대하는 것은 범법행위였으므로 은밀하게 무역을 진행하여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0)</sup> 사무역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되었기 때문에 사대부들도 文集 등 사적 기록에 사무역 행위와 규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16세기 후반 일부 문집에서 사무역 현황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조정 신료들의 사무역 규모에 대한 언급, 당시 적발사례로 확인되는 사무역 규모와 문집사례 비교 등 몇 가지 영역에서 확인되는 사무역의 면모를 취합하여 16세기 사무역 규모의 윤곽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9)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수출품 또는 수입품의 교역량을 통해 조선의 대명 사행무역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 시기는 양국의 양자가 합의한 실물화폐(상품)의 교환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선의 수출품이란, 실물화폐로서의 교환가치 성격을 띠고 명축에 지불한 조선의 물품을 말한다. 수입품은 조선 사행이 수출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품을 지칭한다.

10) 조선사행단원 개인이 명에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규모를 보면, 使는 布 10匹·人蔘 10斤, 書狀官 이하의 正官은 포 각 5필·인삼 10근, 打角夫는 포 각 3필, 인삼 10근이었다. 이렇게 규정된 수량보다 초과해서 물화를 더 가지고 가면 杖 1백에 처하도록 하였다(『經國大典』卷5, 刑典 禁制). 조선 조정도 사무역 행위 그 자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 수량이 이렇듯 적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무역은 거의 금지사항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사무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행원들은 은밀하게 무역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 1) 조정에서 사무역 규모 언급과 銀

조정 신료들은 16세기 들어 사무역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쏟아 내며 당시의 사무역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무역의 규모와 증가세를 감지할 수 있다. 신료들의 언급에 따르면, 성종 22년(1491)에는 사행단 중 큰 행차의 경우 규정된 品數를 초과한 布의 수량이 거의 5천 필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다.<sup>11)</sup> 전체 布物 수가 아니라, 규정된 品數를 초과한 양이므로, 사무역 수출포가 5천여 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산군 6년(1500)에는 사무역을 위해 사행단이 포 7~8천여 필과 金銀, 잡물 등을 가져가고 있었으며,<sup>12)</sup> 16세기 일본산 은 유입 이후 시점인 중종 35년(1540)에는 사행원이 1인당 銀 3천 냥 이상을 가져간다고 개탄하고 있다.<sup>13)</sup> 15세기 말에서 16세기를 거치며 사무역이 얼마나 급성장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종 34년(1539) 무렵은 일본이 銀鑛 개발 이후 조선에 급격하게 대규모로 은을 수출한 시기이다.

중종 35년(1540)경의 자료로 16세기 중반 은 수출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정량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명으로 출발한 사행단원(정사, 서장관, 질정관, 자제군관, 통사, 의원, 화원 등)은 약 35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들이 1인당 은 3천 냥을 가져갔을 것으로 본다면, 1회 사행길에 銀 105,000냥이 수출되었을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모든 사행원들이 1인당 평균 銀 3천 냥을 가져갔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은 3천 냥은 사무역 주도층의 무역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通事, 使臣 관련자(子弟軍官, 은밀히 편승한 부상대고, 奴) 등 사행원 대부분이 사무역에 가담하

11) 『成宗實錄』 권251, 22년 3월 29일 乙巳.

12)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丙申.

13) 『中宗實錄』 권93, 35년 7월 25일 甲寅; 『中宗實錄』 권94, 35년 10월 26일 甲申.

14) 『明實錄』에 기록된 조선사행 인원수는 29~40명으로 확인된다(『明世宗實錄』 卷22,嘉靖 2年 正月 辛未: 『明世宗實錄』 卷25,嘉靖 2年 4月 戊戌: 『明世宗實錄』 卷38,嘉靖 3年 4月 甲子: 『明世宗實錄』 卷47,嘉靖 4年 正月 甲戌; 『明世宗實錄』 卷59,嘉靖 4年 閏12月 癸未: 『明世宗實錄』 卷108,嘉靖 8年 12月 癸未: 『明神宗實錄』 卷2, 隆慶 6年 6月 丁丑: 『明神宗實錄』 卷21, 萬曆 2年 1月 甲午; 『明神宗實錄』 卷91, 萬曆 7年 9月 壬子). 16세기 조선 사행단 인원수는 사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약 35명 내외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였지만, 거액 소지자를 1회 사행에서 약 10여 명 정도 파견되는 통사만으로 한 정해서 계산한다면,<sup>15)</sup> 1회 사행길에서 은 3만 냥, 연간 약 12만 냥 내외의 은이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종 5년(1550) 신료들은 이 시기 ‘북경사행의 간사한 무리들이 가져가는 은이 많게는 1만여 루를 적어도 수천 루를 밀돌지 않는다’고 고언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은 수출 세태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다만 여기에서 1만 냥이라 는 수치가 사무역 적극 주도층의 1인당 수출량인지, 한 사행단 전체의 수출량을 합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의 명종 5년(1550)의 사례는 수출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무역량의 범위를 추산하고자 한다. 무역규모를 적게 잡아서 1만 냥이 한 사행단의 전체 수출량 합산으로 본다면, 연간 약 4만 냥 내외의 은이 명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다. 16세기 조선은 사행을 연간 약 4회 정도 파견하였으므로<sup>17)</sup> 이를 기준하여 연간 약 4만 냥의 은이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만 냥을 사무역 주도층의 1인당 수출량으로 계산해보자. 역시 주도층을 통사 약 10명으로 제한해서 계산한다면, 1회 사행길에서는 10만 냥, 연간 최대 40만 냥 내외의 은 수출범위를 그려볼 수 있겠다. 당시의 정확한 은 수출량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규모 범위를 짐작한다면 연간 약 4만~40만 냥 내외의 범위 내에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료들의 위와 같은 무역 규모 언설은 당시 조선 조정의 보고에 오르내리는

15) 16세기 조선의 통사는 1회 사행에서 약 10명 내외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陽谷赴京日記』; 『葆眞堂日記』; 『冲齋集』; 『東湘集』; 『荷谷集』; 『重峯集』; 『鶴峯逸稿』). 조선 전기 명으로 파견되었던 조선의 통사는 단순한 중국어 통역자가 아니다. 중국어가 가능하고, 공무역이 담당 업무인데다 사행에 가장 자주 파견되어 명내 정보와 시장 동향까지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통사는 자신의 사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朝官들의 사무역까지 대행해주는 등 무역 활동의 핵심세력이었다. 통사는 조선 전기 사행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통사 외에도 대부분의 사행단 구성원들은 사무역에 가담하였는데, 개인별 교역량에는 편차가 있다. 1회 사행의 무역량 규모를 가늠할 때 당시 사행원 개인당 사무역 규모를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무역의 핵심세력이자 가장 많은 금액을 소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통사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16) 『明宗實錄』 권10, 5년 10월 27일 丁亥 “赴京之行 搜銀之法 不爲不嚴 而奸細之徒 萬端生謀 期於必齎 多至萬餘兩 小不下數千兩 及其還也”

17) 박성주, 2004 『高麗·朝鮮의 遣明使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러 논의들을 감안하다면 당대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볼 수 있다. 가령 중종 32년(1537) 冬至使로 파견되었던 趙賢範은 실세였던 金安老의 부탁으로 銀과 金·樺皮를 수출하여, 중량이 큰 납철만 20여 驄 수입해왔고, 다른 물건도 이에 상응하였다.<sup>18)</sup> 결국 무거운 납철과 기타 잡풀 모두하여 40여 태를 수입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40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당시 驄 규정을 통해 무역품의 무게를 짐작해 보고자 한다.

駄는 말 한 마리에 적재할 수 있는 짐의 무게 단위이다. 태는 말 1마리 등 위에 짐이 떨어지지 않게 잘 결속시켜 오른쪽과 왼쪽 각각 1隻씩 짐을 얹히는데, 이를 총 2척의 짐을 1駄로 하였다.<sup>19)</sup> 조선 조정에서는 駄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규정하여 과적을 단속하였는데, 태종 5년(1405)에는 1태에 100斤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sup>20)</sup> 그런데 성종 9년(1478) 1태의 단위 무게가 변경되었다. 이는 아래 기사와 같다.

禮曹에 傳旨하기를, “금후로 北京에 가는 인원이 사사로 가져가는 雜物은 한 駄마다 140근을 넘지 말고 扇子·雨籠도 斤數 안에 넣어 계산하라.”하였다.<sup>21)</sup>

위의 기사와 같이 15세기 말에 사행단 개인이 사사로이 가져가는 짐바리는

18) 『中宗實錄』 권86, 32년 12월 14일 己未: 『中宗實錄』 권104, 39년 7월 26일 癸亥.

19) 아래 조선 후기 회화를 통해 말에 실린 隻의 형태와 駄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1〉 松石 李亨祿, 「눈 내리는 주막풍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 『太宗實錄』 권9, 5년 2월 20일 丙戌.

21) 『成宗實錄』 권88, 9년 1월 15일 戊寅 “傳旨禮曹曰 今後赴京人員私齋雜物 每一駄母過百四十斤 扇子 雨籠 斤數內入計”

140근까지 실을 수 있게 태의 규모를 증가시켰던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선조 36년(1601)에는 통사 개인의 짐바리를 1척당 무게 50근으로 지정하고 있어, 2척으로 구성된 1태의 무게가 100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볼 때 16세기에 1태는 적게는 100근, 많게는 140근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100근은 60kg 내외였던 것을 감안할 때<sup>23)</sup> 1태는 약 60~84kg으로 환산할 수 있다.

1태가 약 60~84kg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종 32년(1537) 동지사 조현범은 말 40마리를 동원하여 총 약 2.4톤~3.3톤에 달하는 물건을 싣고 돌아왔던 것이다. 김안로 개인 한 명의 청탁으로 1회 사행길에서 약 2.4톤~3.3톤에 달하는 물품을 수입해 온 것이다. 이를 기준하여 연간 규모를 계산하면 김안로와 같은 권신은 연간 약 9.6~13.2톤에 달하는 각종 물품을 명에서 수입해 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물론 김안로가 당대 최고의 權臣이었던 정치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겠으나, 권신은 어느 시기나 존재했으며, 이 시기가 아직 일본산 은이 유입되기 이전, 즉 본격적인 은 수출 시대가 도래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무역 교역량이 더욱 주목된다. 이 수치가 사무역이 폭증하기 전에 김안로 한 개인의 부탁으로 正使 조현범이 수입해온 물량일 뿐이니, 같은 사행단에 포함된 다른 통사들, 김안로 외에 여타의 세력가들이 청탁한 무역품, 奴子나 軍官을 사칭하고 참여하는 富商大賈, 요동으로 향하는 護送軍의 사무역까지 합하면 요동에서부터 북경까지 이루어지는 북경사행 사무역의 전체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신료들의 언급 속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6세기 이후 조정 신료들이 사무역 규모를 주로 銀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물품들도 많이 수출되었지만,<sup>24)</sup> 은이 사무역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고 禁物

22) 『宣祖實錄』 권163, 36년 6월 10일 乙未.

23) 1근의 무게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약 200g 내외로 사용되었는데, 고려시대에 약 600g 내외로 변화되었다. 조선 세종대 정혜진 衡制에서 1근은 약 642g으로 추정되고, 조선 현종 15년(1674)의 기록에 남은 香椀을 실제 계측한 결과 조선 후기 1근은 약 561g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종봉, 2001 『한국중세도량형제도연구』, 혜안, 187-216면). 따라서 1근을 약 600g 내외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산군 9년(1503) 국내 은 제련 기술 개발로 은 생산이 유연해지자, 조선 사행단은 국내에서 생산된 을을 명으로 수출하였고, 이 때문에 국내 銀 產地가 여러 곳인데 국가 사용량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sup>25)</sup> 중종 32년(1537) 신료들은 조선사행단의 은 수출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고 토로하였으며,<sup>26)</sup> 명종 즉위년(1545)에는 영의정조차 ‘金銀의 법이 비록 엄하지만, 왕래하는 행차에 그 누가 銀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라며 사행단원이면 누구나 은을 수출하고 있음을 신료들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sup>27)</sup> 일본 은 유입 이후에는 일본인에게 은을 사서 명으로 수출하였고,<sup>28)</sup> 한 사람의 수입품 짐이 많은 경우 수십 駄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었다.<sup>29)</sup> 이러한 정황에서 중종 39년(1544) 明 會同館 主事로부터 ‘조선 사행단이 사용한 銀이 너무 많아, 명 商人們이 이익을 다투느라 해가 적지 않다’는 경고를 듣기에 이르렀으며,<sup>30)</sup> 명종대에도 조선의 과도한 은 수출에 대한 명 관료의 우려와 경고는 반복되었다.<sup>31)</sup> 조선 사행단이 회동관 館夫에게 뇌물로 銀을 준 뒤 門禁을 어기고 북경시장에 나가 교역을 진행했던 것이 비난을 받은 것이다. 16세기 조선 사행단에 만연했던 사무역과 은 수출 관행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조정 신료들의 언급을 중심으로 16세기 사무역의 규모와 그 가운데 조정이 주목했던 은 수출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연산군 6년(1500)에는 사

24) 조선사행 구성원이 사행무역 분야에서 활용한 수출품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역 분야에서는 16세기에 銀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였고 布, 부채, 笠帽, 문구류(벼루, 봇, 먹), 인삼 등도 주요 수출품이었다. 조선 정부는 공무역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價物로 正布를 책정하였고, 명 관료에게 주는 예물과 각종 사행경비에 대해서는 부채, 입모, 벼루 등의 물품을 활용하였다. 수출품의 종류와 각 물품의 수출 비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구도영, 2017 앞의 논문을 참고한다.

25) 『中宗實錄』 권9, 4년 8월 28일 戊子.

26) 『中宗實錄』 권86, 32년 12월 19일 甲子.

27) 『明宗實錄』 권2, 즉위년 11월 17일 丙子.

28) 『中宗實錄』 권92, 34년 10월 23일 丁亥; 권92, 34년 10월 24일 戊子; 권95, 36년 6월 21일 丙子; 권96, 36년 11월 28일 庚戌.

29) 『中宗實錄』 권93, 35년 7월 25일 甲寅.

30) 『中宗實錄』 권102, 39년 2월 12일 辛巳.

31) 『明宗實錄』 권21, 11년 11월 1일 丙辰.

행단이 1회 출국할 때마다 포 7~8천여 필 및 金銀과 잡물이 수출되었다. 중종 35년(1540) 무렵 일본산 은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는 1회 사행길에 약 3만 냥의 은이 수출되었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12만 냥 내외의 은이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종 5년(1550) 무렵 당시 수출 규모를 가늠해보면 연간 약 4만~40만 냥 범위 내에서 은이 명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산은 은 수출에 대한 당시 신료들의 논의와 조정 내에서 오고간 여러 보고들을 감안한다면 당대 현실을 정량적 차원에서 접근한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 2) 사무역 통제규정

16세기 사무역의 확대는 당시 관련 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사무역 통제가 가장 강력히 천명되던 때가 중종 35년(1540) 이후 『大典後續錄』이 편찬되던 때였다. 당시는 일본산 은 유입으로 사무역 폭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權臣 金安老가 정계에서 제거되고, 己卯士林이 복귀하여 정국동향이 재편되면서 사무역에 대한 통제 의지가 16세기 중 가장 강력하게 천명되고 있었다.<sup>32)</sup> 그런데도 이 시기에 완성된 『大典後續錄』에 ‘商賈人이 사사로이 물화를 부탁하여 唐物을 무역하는 자는 부탁 받은 자와 함께 杖 100대에 처하고, 全家徙邊한다. 물화가 20貫이 넘지 않으면 1등을 감한다’는<sup>33)</sup> 조항이 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사무역의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는 가운데에서도 물화가 20貫이 넘지 않으면 죄를 감해준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굳이 마련한 것이다.

16세기 물화 20貫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貢의 단위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세종대 동전 1,000닢의 무게를 1관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 1관이 약 4kg이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으며, 일본의 도량형 표준량을 도입한 고종 39년(광무 6, 1902)에는 3.75kg으로 정하고 있다.<sup>34)</sup> 필자는 조

32) 구도영, 2015 앞의 논문.

33) 『大典後續錄』 卷5, 刑典 禁制.

34)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 24』, 622-623면; 정성일, 2004 「朝鮮의 銅錢과 日本의 銀貨: 貨幣의 流通을 통해 본 15~17세기 韓日關係」 『한일관계사연구』 20, 10-14면.

선 전기 1관의 무게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현존하는 朝鮮通寶의 무게를 직접 계측하였다. 조선통보 1닢의 무게는 3.02g부터 4.8g까지 4g 내외로 측정되었다. 동전마다 마모도에 차이가 있고, 제조 당시 미미한 차이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평균치는 3.72g으로 고종대 도량형 표준치인 3.75g과 거의 유사하다.<sup>35)</sup> 이에 조선통보 1닢의 무게를 약 3.75g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1관은 조선통보 1,000닢으로 구성되므로 1관의 무게는 약 3.75kg으로 환산되고, 20관을 환산하면 약 75kg에 해당한다. 중종 37년(1542) 1회 사행길에서 1인당 무역량이 75kg 이하의 경우는 죄를 1등 감해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사무역이 그만큼 만연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 3) 사무역 단속 적발 사례

조선 조정은 사행단원이 禁物을 수출하거나 사무역을 위한 수출품을 상당량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義州에서 출국 전, 사행단 전체에 대한 짐바리 검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사행단은 의주에서 짐바리에 대한 출국검사를 받은 뒤,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출국검사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보고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규모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해보고자 한자.

『大典後續錄』이 반포될 무렵은 사행무역 감찰이 강화되어, 일시적이나마 단속에 적발된 자들이 크게 증가한다.<sup>36)</sup> 출국검사 감찰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통사들도 눈치장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사무역 교역량을 축소시켰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중종 36년(1541) 요동사행단인 押解官 申洵이 요동에서 사무역을 하고 13駛 분량의 짐바리를 가져온 것이 적발되었다. 앞의 계산 방법을 상기하면 13태

35) 필자는 2017년 4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협조를 받아 조선통보의 무게를 직접 계측하였다(관련근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1163호, 2017.4.20/소장품 열람허가). 필자가 계측한 조선통보는 박물관 유물등록번호 '신수 12558'의 5닢과 '신수 24311'의 4닢이다. '신수 12558' 5닢은 각 3.02g, 3.56g, 3.76g, 4g, 4.8g이며, '신수 24311'은 3.13g, 3.27g, 3.65g, 4.3g이다. 이들 크기는 모두 지름 2.4cm였으며, 마모가 진행되어 전마다 무게가 조금씩 모두 다르다. 필자가 계측한 무게의 평균치는 3.72g으로, 고종대 도량형 표준치인 3.75g과 유사하다. 따라서 조선 전기 조선통보의 무게 역시 약 3.75g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6) 구도영, 2015 앞의 논문.

라면 약 780~1,090kg 물량이다. 신료들은 그의 개인 교역량을 보았을 때에 銀을 상당량 가져간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은 수출은 死刑에 해당하므로 관련자가 결코 그 사실을 실토히지 않아 진상을 올곧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sup>37)</sup> 압해관은 遼陽에 파견되는 요동사행단의 책임 관원이다. 譯官 중에서 임명하며, 16세기에 주로 여진에게 사로잡혔다가 조선으로 탈출해 온 중국인을 다시 요양까지 돌려보내주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 압해관 1명의 요동사행 1회 수입 물량이 780~1,090kg이라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중종 35년(1540)에는 동지사의 70세 子弟軍官이 은 100냥을 몰래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었다.<sup>38)</sup> 이듬해 성질사의 押馬官 奴子도 은을 가지고 가다가 적발되었다.<sup>39)</sup> 중종 39년(1544) 謝恩使 행차에는 金·銀을 소지한 자가 여러 명 발각되었다. 軍官 朴礪는 짐바리 감찰 분위기가 엄혹한 것이 걱정되었는지 압록강을 넘기 전 준비했던 은의 상당량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그 중 일부인 은 92냥만 쟁겨 갔으며,<sup>40)</sup> 같은 사행단의 통사 趙範善은 銀을 가지고 명에 갔다가 무역을 하지 못하고 도로 가지고 돌아왔다.<sup>41)</sup> 통사 權仁佐는 金 7근 10냥, 즉 122냥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sup>42)</sup> 금은 은보다 더욱 고가의 물품이어서 주목된다.<sup>43)</sup> 중종 34년~중종 39년(1539~1544) 무렵은 일본 은이 유입되어 은

37) 『中宗實錄』 권95, 36년 6월 5일 庚申: 권95, 36년 6월 14일 己巳.

38) 『中宗實錄』 권94, 35년 12월 3일 庚申.

39) 『中宗實錄』 권95, 36년 6월 5일 庚申.

40) 『中宗實錄』 권103, 39년 6월 2일 己巳: 권103, 39년 6월 11일 戊寅.

41) 『中宗實錄』 권103, 39년 6월 15일 壬午: 권103, 39년 6월 20일 丁亥.

42) 『中宗實錄』 권103, 39년 6월 20일 丁亥: 권104, 39년 7월 25일 壬戌. 당시 은 1근은 16냥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그러했다(『高麗史』 卷79, 志 33 食貨 2 鹽法 忠宣王 元年 2月 “소금의 가격은 은 1근에 64석, 은1냥에 4석, 포 1필에 2석을 상례로 삼도록 하라.”).

43) 주지하다시피 金은 銀보다 훨씬 고가의 물품이다. 당시 무역 규모를 참고하기 위해 금 시세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금 한 돈을 약 20만 원(207,900원 / 2017.4.19. 기준 소매가 시세, 한국물가협회 근거)으로 설정할 때 한 냥에 200만원에 상당한다. 이에 기준하면 금 122냥은 현재 시세로 약 2억 4천여 만 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세종대 1냥의 무게는 약 40g으로 추정되는 바(이종봉, 앞의 책, 215면), 오늘날 1냥 37.5g과 비교한다면, 1냥 무게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용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16세기를 통틀어 사무역 감찰이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때이다. 權臣과 결탁하여 감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박여는 결국 92냥을 제외한 은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통사 권인좌도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심스레 물품을 준비했을 터인데, 그것이 금 122냥인 것이다. 이는 15세기 전반에 정사가 布 10필 이상만 가져가도 처벌당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위와 같이 출국 전 의주에서 감찰에 적발되는 사례들은 사행무역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감찰에 발각된 사례는 사행무역 규모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위의 적발 사례는 사행무역 수행자들을 전부 검거한 정황이 아니라, 여러 사무역 수행자들 중 일부가 적발된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비슷한 시기 外戚 尹元衡은 부상대고들까지 사행단에 합류시키면서 대대적인 사무역을 진행했지만, 감찰의 단속에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sup>44)</sup>

사행단 출국검사 시 적발된 양이 실제 사무역 수출 규모를 얼마나 협소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당시 사행록에 기록된 사례에서 구체적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선조 7년(1574) 聖節使 사행단은 渡江 前 의주에서 일행의 짐바리 검사를 실시하였고,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가져가려했던 자들을 적발하였다. 軍官 吳慶祐는 짐바리 무게가 기준치보다 20근(약 12kg) 초과하였고, 火炮匠 閔勳은 大口魚 40여 마리와 油扇 150자루, 角弓 5장을 더 가지고 있었다. 군관 金麗生은 全角弓 2개와 樺皮 10여 쪽을, 호송군 한 사람은 沙器 1竹(그릇 10벌)을 가지고 있었다. 오경우의 경우 기준 초과 수준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되어(약 12kg 초과) 별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나머지 민훈, 김려생, 호송군 1인의 경우는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몰수당했다.<sup>45)</sup> 화포장 민훈이 소지하고 있던 油扇 150자루는 조금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이 챙긴 물품 수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사행단 일원이자 내부 감사를 담당했던 書狀官과 외부 감사관인 御史 양자가 공동으로 물품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규정 위반 건수는 미미한 수

44) 구도영, 2015 앞의 논문.

45)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6月 14日: 6月 15日: 6月 16日.

준이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16세기 조선사행단의 짐바리 출국 심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적발할 만큼 매우 까다로웠다거나, 아니면 사행무역 규모 자체가 매우 적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작 이 사행단의 북경무역 행위를 보면, 통사 등의 사행원들이 은이나 부채, 벼루 등을 상당수 가져가 무역에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통사들은 銀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통사 宋大春은 다른 사행원들에게 자신이 빌려준 은과 부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라고 質正官 趙憲에게 고백하고 있다. 조현은 통사로부터 북경에서 사무역과 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직접 들었고 보았지만, 적발하거나 제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러한 정황을 사행록에 벼젓이 기록하고 있다.<sup>46)</sup> 당시 은을 국외 반출하여 무역한 자는 발각 시 사형이었다. 의주에 御史까지 별도로 파견하여 출국검사를 하는 것은 은 소지자를 검색해 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임무였다. 그런데 통사 송대춘만 보아도 사무역에 사용할 은과 부채 등 각종 물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으나, 출국 시 적발되지 않았다. 즉 정작 핵심 인사들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품은 무사히 통과되었고, 처벌이 무색할 만큼 소소한 몇몇 물품 소지자들만 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朝官이었던 柳希春 역시 이 사행단의 통사 白元凱에게 자신의 사무역을 의뢰하고 그 값으로 銀, 인삼, 부채, 포 등을 주었지만 감찰에 발각되지 않았다.<sup>47)</sup> 유희춘은 사행단이 출국할 때마다 통사들에게 자신의 서책 사무역을 여러 차례 의뢰했지만, 감찰에 적발된 바 없었다.<sup>48)</sup>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보면, 실록 등 관찬사료의 기사에 드러나는 사무역 발각 사례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전체 사행무역규모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46) 『重峯集』 卷11, 朝天日記, 萬曆 2年 甲戌 8月 22日.

47) 『眉巖日記草』 第4册, 甲戌年 4月 27日; 5月 4日.

48) 『眉巖日記草』 第2册, 戊辰年 2月 11日; 2月 12日; 第4册, 庚午年 5月 22日; 第4册, 庚午年 7月 19日; 第4册, 庚午年 7月 20日; 第4册, 甲戌年 4月 27日.

#### 4) 銀무역의 흐름

明宗代(1545~1567)는 16세기 가운데 사무역이 가장 범람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 文定王后의 垂簾聽政과 親族 尹元衡의 실질적 집권으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무역에 대한 통제가 가장 이완되었던 시기였다. 尹元衡은 사무역 통제가 가장 강건하게 이루어지던 중종 35년~중종 39년(1540 ~1544) 무렵에도 사행에 부상대고를 대동하여 과도한 사무역을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 중종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한 편력이 있는 윤원형이 정권을 잡았으니 국내 단속 체계는 이완될 수밖에 없었으며, 사행단원들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사무역 시장에 뛰어들었다.<sup>49)</sup>

한 사례를 살펴보면, 명종 17년(1562) 북경에서 사행 일정을 마무리한 正使들은 통사들에게 귀국을 재촉하며, 귀국 관련 업무를 수차례 지시하였다. 그러나 통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 통사들만이 명 현지어(중국어) 구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사와 예부의 정황을 양축에 정확히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사의 농간을 의심한 사신은 귀국 요청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명 예부에 올리기에 이르렀다.<sup>50)</sup> 주목할 점은 왜 통사들이 正使의 지시를 어기고 속이면서 까지 북경에 오래 체류하려고 했냐는 점이다. 사행록의 저자는 그 이유를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통사들이 북경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르며 무역을 의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역 외에는 통사들이 감히 정사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북경에서 열흘 이상을 더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명종대는 통사들이 권신들로부터 사무역 의뢰를 많이 받았을 것이며, 위는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짐작된다.<sup>51)</sup> 그러했기 때문에 正使조차 자신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북경에 오래 체재하려 했던 통사들의 망령된 행각을 제대로 막거나 대응하지도 못했으며, 더욱이 이 상황을 통탄해하면서도 그 이유를 기록으로 명확히 남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9) 구도영, 2015 앞의 논문.

50) 『燕京行錄』嘉靖 41年 廿戌 12月 11日; 12月 12日; 12月 17日; 12月 18日.

51) 명종대는 사행단의 출국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搜銀御史를 매번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領議政 尚震, 領事 尹元衡 등은 수은어사가 사무역을 단속 적발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明宗實錄』 권25, 14년 5월 2일 癸酉).

명종대 은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어떠할까. 중종 말부터 그 흐름을 살펴보면, 중종 34년~39년(1539~1544) 무렵은 조선에 일본 은이 급격하게 수입되어 사무역이 폭증한 시기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사무역을 가장 강력히 통제하던 격동의 시기였다. 즉 사무역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감찰 대책 강화가, 대치하던 시점이었다. 중종 37년(1542) 은 수입에 비해 일시적으로 은 수출이 부진해지자, 조선 내 은 가격의 가치가 1/8까지 급락하기도 하였다.<sup>52)</sup> 조선 내 은 가격이 폭락하자 일본은 은 수출의 다른 창구를 찾았고, 明과 직접교역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명종 초 무렵은 중종 35년(1540) 무렵에 비하면 조선 내로 유입되던 일본 은의 양이 어느 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3)</sup>

그러나 명종 5년(1550) 무렵 조선에서 명으로 수출되는 은이 연간 4~40만냥 되었을 것이 앞서 1절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명종 7년(1552) 일본 국왕 사신이 銀을 많이 가지고 와서 조선에게 官貿易을 요구하였으며,<sup>54)</sup> 명종 12년(1557)에도 은 3만냥을 가져와 조선 조정에게 은 무역을 요구하였다.<sup>55)</sup> 일본 사신이 가져온 銀은 조선 정부가 수매해주는 은이지만, 당시 일본이 조선 정부와도 관무역을 행하며 은 수출 판로를 넓히고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무역이 이럴 진대 민간에서 은 무역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 명 정부의 왜구 진압에 의해 明日간 직접 밀무역 경로가 축소되고, 마닐라를 경유하여 아메리카 은이 복건으로 유입되면서 명에서 일본산 은의 매력도 감퇴하였다. 1560년대 이후 명과 일본 간에 전개되었던 직접 무역이 이전보다 쇠퇴하면서,<sup>56)</sup> 조선의 일본 은 수입은 보다 수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52) 『中宗實錄』 권93, 37년 6월 10일 己丑.

53) 『大東野乘』 卷4, 稗官雜記 1.

54) 『明宗實錄』 권13, 7년 6월 12일 癸亥.

55) 『明宗實錄』 권22, 12년 1월 15일 己巳; 권22, 12년 2월 12일 丙申.

56) 박경수, 2003 『전근대 일본유통사와 정치권력』, 논형, 428-429면; 黑田明伸(정혜중 옮김), 2005 『화폐시스템의 세계사』, 논형, 138-143면. 1560년대 명조의 왜구 토벌이 최종 국면을 맞이하고, 1566년 漳州 지방을 거의 제압하자, 명 복건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하여 화폐로 사용하던 일본 경제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명으로부터 동전 수입이 중단되자,

이처럼 일본이 조선으로 은을 수출하는 규모는 시기마다 편차가 있었겠지만, 일정 수준은 유지하며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명과 직접 교역을 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왜구에 민감했던 16세기 명 해안지대에서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武裝이 불가피했고, 원거리 항해에 따른 난파 위험에도 노출되었다. 반면 일본이 조선의 부산과 왕래하면 난파 위험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무장할 필요성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명과 일본 간 직접 교역의 높은 위험비용을 고려한다면, 일본에게 조선과의 무역은 위험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장점을 가진 무역상대국이었다. 따라서 명종대 조선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국내 사무역 통제 이완, 일본산 은 수입 등으로 대명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16세기 조선 내 은 가격 변동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6세기 초반에는 은 1냥에 포 4필이었다.<sup>57)</sup> 이 시기는 조선 端川 등 국내 산지에서 銀을 확보하던 시절로, 국내산 은만 유통되어 은 공급에 비해 명으로의 수출 수요가 커서 은 가격이 가장 고가였다. 그러다가 중종 34년(1539) 이후 일본산 은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조선 조정의 감찰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은 구매력이 잠시 급락했을 때에는 은 1냥이 면포 1/2필로, 은 가격이 1/8로 하락하였다.<sup>58)</sup> 명종 1년(1545) 명으로 은 수출이 다시 증가하여 은 1냥이 면포 2~3필에 이르렀으며,<sup>59)</sup> 선조 7년(1574)에는 은 1냥에 포 2필인 것이 확인된다.<sup>60)</sup> 명종 1년(1545) 이후부터 선조대에는 은 1냥 가격이 면포 2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 은 수입과 수출 양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특히 서일본 지역에서는 동전을 대신하여 쌀이 화폐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형국은 당시 명일무역의 단면을 보여준다.

57) 『中宗實錄』 권98, 37년 7월 14일 壬戌.

58) 『中宗實錄』 권93, 37년 6월 10일 己丑.

59) 『明宗實錄』 권2, 1년 11월 17일 丙子.

60) 『眉巖日記草』 第4册, 甲戌年 4月 27日; 第4册, 甲戌年 5月 初4日.

### 3. 공무역의 교역 규모

본 장에서는 공무역 수출품으로 활용된 價物의 양, 운송과정에서 적재된 짐바리의 수 등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당시 공무역 규모의 일상을 짐작하고자 한다.

#### 1) 16세기 초 공무역 규모 사례

공무역 규모는 사행단이 활용했던 운송수단 규모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행단은 조선에서 요양까지는 말로 수출입품을 실어 날랐고, 요양에 도착해서는 명에서 제공하는 車로 운반하였다. 우선 조선에서는 운송수단이 말이었으므로 사행단 짐의 규모를 짐바리, 즉 驄로 계산하였다.

중종 20년(1525) 성질사 출국 시 대명 공무역(물품 구입)에 사용될 正布 양이 40駄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신료들은 당시 평안도의 瘦疫이 치열하여 민폐를 감해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역의 교역량을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 다른 사행들의 공무역 정포가 보통 20駄 정도였다고 아뢰고 있다.<sup>61)</sup> 이 사례를 볼 때, 16세기 초반 공무역 규모는 輸出 價布 기준으로 정포 20태 분량에서, 많게는 40 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그렇다면 1駄에 면포 몇 필을 적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위 중종 20년(1525) 공무역 규모가 확인될 것인데, 駄는 운송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 무게 단위이므로 면포 1필의 무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이 어렵다. 또한 16세기에 1駄에 면포 몇 필을 적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방식을 참고해야 했는데, 조선 후기 清에 歲幣를 보낼 당시 1태에 면포 몇 필을 싣는지를 규정한 作駄式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조선 후기 조정은 清으로 보내는 歲幣를 꾸

61) 『中宗實錄』 권54, 20년 4월 26일 乙卯.

62) 당시 면포 중 올수와 길이에서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면포를 龟布라고 하였고, 정부에서 규정한 5升(1승은 80올), 35尺(길이), 7寸(너비)를 갖춘 면포를 正布라고 하였다(유현재, 2006 「16세기 추포 유통과 그 성격」『한국사론』 52).

릴 때 ‘白上木 18同 10匹을 7駄에 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3)</sup> 상목은 면포 중에서도 正布를 말하며, 同은 50匹을 말한다. 그렇다면 상목 910필을 7駄에 싣는 것 이니 1駄당 130필을 싣고 있었다. 이 셈법을 중종 20년(1525)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일반적인 공무역 수량이 약 20駄라고 하였으니, 1회 사행길에서 정포 약 2,600필 정도가 수출되는 것이었다. 연간 공무역 규모를 추정해보면, 16세기 연 평균 사행 과전수가 약 4번이었으니, 연간 정포는 약 10,400필 정도가 수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중종 20년(1525) 성 절사처럼 공무역 수출가포가 40태 책정된다면 연간 수출규모는 약 정포 20,800 필에 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중종 20년(1525)의 공무역 수출규모(연간 정포 약 10,400~20,800 필)는 공무역 수출 규모의 최소치로 보아야 한다. 추산의 근거가 된 조선 후기 작태식은 ‘清 조정에 보내는 歲幣 운반 규정’이므로 貢物로서의 규격과 원칙에 맞게 포장하고 짐바리를 운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선 전기 상거래에 이용할 공사무역의 수출품 운반은 過積載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일례로 세조대 약재 공무역 價布 운반에 책정된 말은 2~3마리뿐이었지만, 실제 운반해야 할 짐은 말은 15~20마리가 필요한 분량이었다.<sup>64)</sup> 이처럼 책정된 말에 비해 짐이 많아서 과적재는 일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이러한 차이를 염두한다면 조선 후기 세폐 작태식으로 추산된 중종 20년(1525) 무렵의 교역량은 당시 연간 공무역 규모의 최소치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정리하면, 중종 20년(1525) 무렵 1회 사행단의 공무역 수출 규모는 최소 정포 약 2,600~5,200필(20~40駄)로 추산되며, 이를 근거로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최소 정포 약 10,400~20,800필이었다.

63) 『燕行事例』 卷1, 歲幣作駄依成冊抄出以備所考; 『萬機要覽』 財用編 5, 歲幣, 作駄式.

64) 『世祖實錄』 권36, 11년 8월 15일 庚寅.

65) 『成宗實錄』 권174, 16년 1월 10일 癸巳; 『中宗實錄』 권60, 23년 2월 8일 庚戌; 권78, 29년 11월 5일 丁卯.

## 2) 공무역의 부분 무역 규모

위의 사례처럼 공무역의 전체 규모 수를 언급한 사례는 많지 않고, 공무역 일부 무역량을 언급한 경우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5세기 말 연산군대 공무역 규모가 언급된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정부 좌의정 한치형·우의정 성준·좌찬성 이극균·우찬성 박건·좌참찬 홍귀달·우참찬 신준이 삼가 상언하기를, “(중략) 또 紗羅綾段과 書籍·藥石 같은 류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매번 명나라에 가는 길에 무역하여 國用에 충당해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선왕 때에 무역 물건은 정한 수량이었는데, 근일에는 점차 많아졌습니다. 중국산 물품과 국산 물품은 그 가격이 현격하여 우리나라의 萬錢이 겨우 중국의 百錢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公賀한 莎麻布의 총수는 3,700여 필에 달하며, 이를 면포로 계산하면 18,600여 필로 이것만으로도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데, 게다가 사신의 접대가 갖고 이웃 나라의 청 또한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후략)”<sup>66)</sup>

위의 기사를 통해 연산군 5년(1499) 공무역의 교역량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 연산군 5년 3월을 기준하여 1년 동안 莎麻布 3,700여 필을 공무역하였으며, 이를 면포로 계산하면 18,600여 필에 달하는 것이었다. 공무역의 주요수입품은 수우각, 서책, 약재, 비단 등이었는데, 연산군대 저마포 수입량만 3,700여 필에 달하였다. 저마포 수입량으로 전체 공무역 수량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 공무역 규모를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

16세기 중반의 다른 사례를 보자.

右贊成 梁淵이 아뢰기를 (중략) 평안도 軍民의 고통은, 하나는 부경사행이 왕래하는 횟수이며, 하나는 변장의 侵漁입니다. 中原에서 약을 무역하는 데에 드는 布가 30여 駄에 이르러, 백성의 곤폐가 실로 이에서 말미암으니, 양을 해아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67)</sup>

위의 기사는 중종 36년(1541)의 일이다. 당시 우찬성 양연은 기근으로 인한

66) 『燕山君日記』 권32, 5년 3월 27일 丙戌.

67) 『中宗實錄』 권96, 36년 9월 26일 己酉 “平安道軍民之困 一則以赴京往來之數也 一則困於邊將之侵漁也 中原貿藥之布 至於三十餘駄 人民之困弊 實由於此 酌量爲之何如”

진휼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선은 명에 진향사와 진위사를 파견해야 했으며, 사은사 파견도 고려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약재 공무역의 양을 헤아려 시행할 것을 제안하여, 사실상 약재 무역을 감할 것을 전의하고 있었다. 또 30태가 한 번의 사행에서 수입되는 양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평안도민의 고통이 사행 파견 횟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약재 무역량을 우려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1회 사행길에서 수입되는 약재라고 판단된다. 연간 약재 총규모가 30여 駄로 규정되어 있다면 굳이 사행파견 횟수를 우려하며 약재무역 규모를 문제제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종 36년(1541) 무렵 1회 사행길에서 약재 수입을 위한 價布가 약 30여 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찬성 양연이 백성의 곤폐가 약재무역에서 비롯된다고 언설한 점을 보았을 때, 약재무역이 공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료에 의거하여 약재무역 규모를 산출하면, 수출 가포 30태는 정포 약 3,900필이 최소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 수치를 기준하여 16세기 중반 연간 약재 무역 규모를 추정한다면, 120태로, 수출 정포 약 15,600필에 이르렀다.

약재무역 규모를 15세기와 비교해보면, 세종 5년(1423)에는 한 사행단의 약재 수입 價布로 黑麻布 5필이 책정되었으며,<sup>68)</sup> 약재 공무역이 많이 늘어난 세조대(1465)에는 60~70필이 책정되었다.<sup>69)</sup> 그러던 것이 중종 36년(1541)에는 약 3,900필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약재 공무역만 비교해 보아도, 1541년 약재 공무역 규모는 1423년 규모보다 780배, 1464년보다 약 60배 증가하여, 그 규모가 수직상승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약재 수입 책정량이 매 사행마다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위의 수치를 15~16세기 약재 공무역 규모의 평균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증가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공무역의 부분 규모를 취합하여 살펴보면, 연산군 5년(1499) 1회 사행단에서 저마포 수입을 위한 價布가 綿布 18,600여 필에 달하였다. 중종 36년(1541) 1회 사행에서 약재무역을 위한 價布가 최소 약 3,900필(30태)이었고, 이

68) 『世宗實錄』 권20, 5년 4월 6일 丙辰.

69) 『世祖實錄』 권36, 11년 8월 15일 庚寅. 세조대는 價布 60~70필을 수출하여 약재 15~20駄 분량을 수입하고 있었다.

를 기준하여 연간 규모를 환산하면 연간 약재 공무역의 수출 규모는 정포 약 15,600필에 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약재 공무역에 한정된 교역량일 뿐이니 전체 공무역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울 것이다. 더욱이 이 추산치는 조선 후기 歲幣 작태식에 의거하였으므로 최소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16세기 초반에는 공무역 전체 수출 가포가 10,400~20,800필로 계산되었는데, 16세기 중반에는 약재 공무역 가포만 약 15,600필에 달하였다. 16세기 초반에 비해서 16세기 중반의 공무역 교역량이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역량이 매 사행마다 일정하진 않겠지만, 이들 사례는 당시 공무역 규모를 어림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3) 사행에 운영된 수레의 양과 공사무역 비율

다음으로 조선 사행단이 명에게 지급받은 수레량을 통해 무역 규모의 추이를 보고자 한다. 조선 사행단은 遼東都司가 있는 요양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명으로부터 수레를 지급받아 북경으로 향한다. 즉 수레의 수로 사행단 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종 21년(1526) 무렵은 명에게 지급 받은 수레가 많을 때는 40輛이었으며,<sup>70)</sup> 중종 36년(1541) 사무역 규제가 강력히 시행되어 통제가 잘 준수된 冬至使의 경우에는 잠시 14량까지 감소하였다.<sup>71)</sup> 명종대(1545~1567)에는 지급받은 수레가 적을 때에는 30~40량 수준이었다.<sup>72)</sup> 선조 5년(1572) 賀登極使의 행차는 명으로부터 수레 22량을 받았다.<sup>73)</sup> 선조 7년(1574) 聖節使는 요동도사에게 수레 30량을 요구했으나, 25량을 받았으며,<sup>74)</sup> 이를 최소치로 보고 있다.<sup>75)</sup> 이를 미루어볼 때, 1539년 이후는 사무역 수출품 중 은의 비율이 16세기 초반에 비해 높았을 것이고, 명종대는 30~40량의 수레가 최소 규모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16세기 중반의 교역량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70) 『中宗實錄』 권56, 21년 3월 22일 乙巳.

71) 『中宗實錄』 권97, 36년 12월 28일 己卯; 권97, 37년 3월 26일 丙午.

72) 『明宗實錄』 권29, 18년 4월 3일 庚戌.

73) 『東湘集』 卷7, 「朝天錄」 隆慶 6年 壬申 9月 29日.

74)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6月 24日.

75)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 2年 甲戌 10月 5日.

판단되며, 16세기 후반에 다소 감소하였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은이 대거 유입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교역규모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행무역 중 공무역과 사무역의 비율이다. 16세기 중반 명에서는 조선에게 많게는 수레 40輛을 내어준 바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사무역 감찰을 강화하여 사무역이 최대 감소했던 중종 36년(1541) 冬至 兼 陳慰使 행차의 경우 수레량이 14량 정도만 동원되었다.<sup>76)</sup> 중종 36년(1541) 동지사 행차의 경우는 정기사행이므로 貢物의 양도 적지 않고, 당시 명의 九廟 화재에 대한 陳慰使도 동행하여 사행경비도 추가적으로 적재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14량으로 감당이 되었는데, 이를 미루어 보면 전체 수레 40량에서 26량 규모의 짐은 사무역품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황제에 보내는 공물, 공무역에 쓰일 면포, 명 관리에게 줄 예물, 사행길에서 소요되는 각종 여행 경비 및 잡품 등에 해당하는 짐을 실은 수레가 14량이고, 사무역 짐을 실은 수레가 약 26량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당시 사무역의 규모를 작게 추정해도 공무역과 사무역의 비율은 약 3:7 비율이 된다.

#### 4. 맷음말

조선 전기 대명 사행무역은 사행단이 출국 이후 의주에서 요동, 북경에 이르는 사행경로 동선에서 전개한 공적·사적 영역의 교역을 뜻한다. 사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 무역에 참여하였다.

16세기 당시 사행무역의 규모를 가늠할 때, 우선 사무역을 살펴보면, 사무역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상 무역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증자료가 요구된다. 16세기 조정 신료들은 사무역 급증에 우려하면서 당시 사무역 규모를 언급하고 있다. 다른 수출품의 종류도 있으나, 은 수출 규모만 본다

76) 『中宗實錄』 권97, 37년 3월 26일 丙午.

면, 중종 35년(1540)의 경우 1회 사행 파견 시 약 은 3만 냥이,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12만 냥 내외의 은이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종 5년(1550) 무렵에는 연간 약 4만~40만 냥의 규모 내에서 은이 명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종 32년(1537) 권세가 1명이 1회 사행길에서 수입해 온 사무역 물량이 2.4~3.3톤 가량이었으며, 중종 36년(1541) 요동사행단의 암해관(통사) 1명이 약 1톤 가량의 물량을 수입해 왔다. 중종 35년~중종 39년(1540~1544) 여러 차례 은이나 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각 사례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사실상 감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권세가들과 그 비호 하에 있던 통사 등의 사무역 행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감찰결과에서 드러난 무역의 규모는 당시 사행무역 규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공무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16세기 초 1회 사행단의 공무역 수출 규모는 正布 20~40駄였다. 조선 후기 歲幣 作駄式을 통해 당시 규모를 가늠해보면, 正布 20~40駄는 약 2,600~5,200필로 추산된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정포 약 10,400~20,800필에 해당한다. 더욱이 조선 후기 세폐 기준인 작태식은 중국 황제에게 보낼 때 활용되었던 규범화된 기준이었으니, 실상 과적재가 일상화되었을 조선 전기 상거래를 미루어보면 연간 정포 약 10,400~20,800필은 당시 무역 규모의 최소치에 해당한다 하겠다.

16세기 중반 약재 공무역 수량을 보면, 이 시기 약재 수출 포는 30대(정포 약 3,900필)였으며,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재 공무역 수출 규모는 정포 약 15,600필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역 일부인 약재 공무역에 한정된 분량이었으며, 16세기 초 공무역 전체 수출 가포 10,400~20,800필에 비교하면 16세기 중반의 공무역 교역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레량을 기준하여 짐바리 규모를 비교해 보면, 공무역과 사무역의 비율은 대략 3:7의 비율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여러 방증자료를 통해 16세기 사행무역 규모의 면모를 유추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교역규모는 주로 북경 사행단의 사행무역 규모에 한정된 것이다. 요동까지 가는 요동사행단의 무역량과 사행단을 호위하는 수백 명

의 護送軍의 무역량은 본고에서 고려되지 못해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6세기 조선의 사행무역 규모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선, 명, 16세기, 공무역, 사무역, 교역량, 은

투고일(2017. 10. 17), 심사시작일(2017. 10. 24), 심사완료일(2017. 11. 20)

〈Abstract〉

Study on Trade Scale of Joseon Envoys' Trade to Ming  
in the 16<sup>th</sup> Century

Koo, Do-Young \*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trade scale of envoys' trade to Ming which has not been illuminated on the study of trade order in the East Asia during the 16th century. The envoys' trade to Ming for the early period of Joseon means the trade of public & private territory developed from the envoys' route from Uiju(義州) to Liaodong, Peking since they left Joseon for Ming. A variety of classes engaged in the envoys' mission participated in this trade.

This study tried to analogize the aspects of envoys' trade(public & private trade) in the 16th century through several supporting materials such as the regulations controlling the private trade, cases of uncovering the crackdown of trade, the flow of silver trade, the numbers of wagons used for envoys' mission by mentioning the scale of public & private trade in the royal court. However, the trade scale examined from this study, was mainly confined to that of Peking envoys' group. As for the hundreds of convoys(護送軍)' trade scale who should escort the envoys' group as well as that of the Liaodong convoys' group to Liaodong, it has been left for the future study assignment because it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is study. If this is additionally studied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approach the scale of Joseon envoys' trade in the 16th century much more closely.

**Key Words :** Joseon, Ming, 16th century, public trade, private trade, trade scale, silver

---

\* Research Professor, History and Culture Institute, Duksung Women's University.